

*인증마크 /인정 마크 사용요령

인증/인정마크는 원본을 확대/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인증/인정마크의 크기는 최소한 15mm이상이 되어야 합니다. (가로 15mm, 세로 10mm)칼라로 된 인증/인정 마크는 원색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, 불가피한 경우 흑백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.

(1) 마크의 종류

- 1) 인정마크 : 인정마크는 KOTRIC인증센터 마크는 KOTRIC인증센터에 인증등록된 기업 (ISO 9001, ISO 14001,45001)이 인증등록을 홍보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마크입니다.



(한국인정평가원 마크)



(KOTRIC 인증센터 마크)

(2)인증/인정마크의 사용요령

- 1) 인정마크는 반드시 단독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, KOTRIC 인증센터마크와 동시에 사용하여야 합니다.

상하 또는 좌우 대칭이 되도록 아래와 같이 사용하시고, 인정마크(KAB)는 우측 또는 하단에 위치하도록 배열하여야 합니다.



- 2) 회사의 판매나 고객에 대한 홍보 등 필요한 경우에 문서, 편지의 상단, 송장 등에 인증/인정마크를 사용하거나 "KOTRIC인증센터로부터 ISO 9001인증을 획득한 업체"라는 방식으로 인증내용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.

- 3) 인증등록자는 제품의 포장에 인정마크와 인증센터마크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나 제품 또는 단위포장에는 인정/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, 인증사실 및 인정/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『제품의 포장』 또는 『단위포장의 포장』에 한하며, 제품 또는 단위포장에는 인정/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①인증/인정마크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

광고 또는 홍보물 : 산업분류상 인증기업의 제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명판, 명함 및 인증기관의 교재, 편지지, 브로셔, 문서, 송장, 인증서 및 수료증 등의 인쇄물 또는 제작물 또는 기타 광고수단

②인증/인정마크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

- 제품 또는 단위포장 : 제품 유통을 위한 최소단위의 품목과 담배갑, 통조림, 음료수캔 등의 용기와 같이 제품 단독으로는 유통이 불가능한 단위포장
- 거래샘플 또는 기타 제품적합성에 관한 진술서
- 깃발, 건물 또는 차량

- 4) 인증등록자는 표시,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·인증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(3) 인증/인정마크 사용승인

인증/인정마크 사용요령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인증/인정마크를 사용하고자 하는 인증등록 기업은 사전에 KOTRIC인증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
(4)인증표시의 홍보 및 제한

- 인증등록자는 인증마크 및 인증사실에 대해 인증서 발행일로부터 홍보 할 수 있습니다.
- 인증등록자는 문서, 송장, 광고등에 인증표시, 인증기관명, 인증표준, 인증번호등을 사용하여 인증을 받은 기업임을 홍보 할 수 있습니다.
- 인증등록자는 생산한 제품에 인증표시, 인증기관명, 인증표준, 인증번호를 사용 할 수 없으며 인증기관이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한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안된다.

[인증홍보의 예]

『KOTRIC인증센터로부터 "PVC파이프의 생산 및 부가서비스"에 대하여 KS Q /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한 기업입니다』

(5) 사용중지 및 위반에 대한 조치

- 1) 인증등록자는 인증범위가 취소 또는 축소되는 경우, 그 취소 또는 축소된 인증범위에 대하여는 인정마크 및 인증센터 마크 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합니다.
- 2)인증취소 및 효력정지를 당한 인증등록자는 해당 기간동안 인정마크 및 인증센터마크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.
- 3)인증등록자가 인정마크 및 인증센터마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시정조치, 인증서회수, 정정 공고 등의 조치 및 인증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
- 4)인증을 받지않은 조직이 인증을 받았다고 허위로 인증표시를 사용하는 경우, 표시•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과징금 부가기준에 의거 처분될 수 있습니다.

*** 인증/인정마크 사용 시 인증서 상에 표기된 IAF MLA마크는 인증등록기업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.**

***인증/인정마크를 다운로드 받으시고자 할 경우에는 우리 홈페이지 www.ktrcc.or.kr (인증안내→홍보요령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**